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4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시행(’23.7.10)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가 출범 예정인바,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분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 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 제외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해당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사항:
협의 완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08. 17. ~ 09. 06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양현정(☎2133-6731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본 폐지조례안 내용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31)